

시행지침

2026년 예술로[路] 기획사업 시행지침(변경)

2026. 3.



목 차

I. 예술로[路] 사업	1
--------------------	---

II. 예술로[路] 기획사업	5
-----------------------	---

붙임1. 참여자 의무 및 활동 유의사항	11
-----------------------------	----

붙임2. [서식] 참여신청서 및 협업활동계획서	16
---------------------------------	----

붙임3. [서식] 협업활동 변경계획서	29
----------------------------	----

붙임4. [서식] 1차년도 중간점검보고서	33
------------------------------	----

예술로[路] 사업

❖ 추진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사업목적

- 예술인-기업·기관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

□ 사업개요

- 사업명: 예술로(路) 사업(이하 ‘예술로 사업’)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월
- 사업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약 800명(기업·기관 약 160개)
 - ※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경우 신청 가능
 -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제외
- 사업내용: 예술인의 역량을 기업·기관 수요와 연계하여 ESG경영, 사회공헌, 공간·지역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예술인의 직업 경로 확장 및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

□ 사업 주요 개편사항

- (산재보험 도입) 안전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 참여 예술인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보험료 지원
 - * 절차: 본인 가입 신청 및 월별 보험료 납부(예술인) → 납부 확인 후 환급(재단)
- (경력단절 지원) 출산·육아, 질병, 군복무 등 다양한 사유로 경력단절된 예술인의 예술계 재진입을 위해 ①가점제 도입* 및 ②경력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 * 예술활동증명 경력단절 유효자 중 사업 공모지원(서류심사) 시, 가산점(5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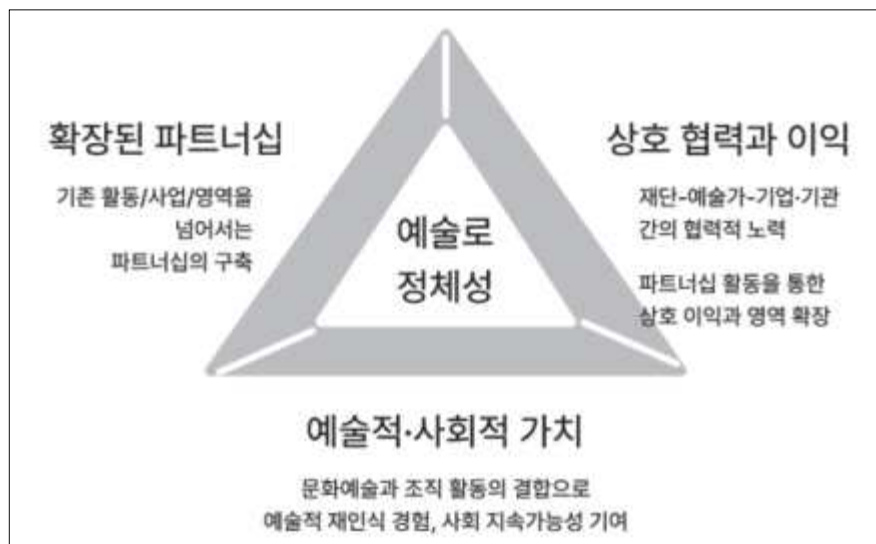
□ 사업 추진방향

○ 사업 방향 및 목표

- 핵심개념 및 참여주체별 주요 목표

<핵심개념> 확장된 파트너십				
주요 목표	예술인	기업·기관	재단(국가)	공통
	직업 안정화	예술적 가치 경험	예술인(국민) 복지 실현	사회 지속가능성 기여
	예술 활동 영역 확장, 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예술 통한 재인식 경험, 사업 영역 확장	예술인 일거리 다양화	협업 통해 복지, 노동, 환경 등에 기여

- 예술로 사업 정체성



□ 사업 추진체계

○ 사업구조

구 분		내 용	운영 주체
다년 (2년)	기획사업	[팀 공모]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단위(기업·기관 및 예술인) 협업활동 추진 ①다년형 2기('25~'26년), ②다년형 3기('26~'27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단년	협업사업	[개별 공모] 기업·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매칭 진행.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 추진	
	지역사업		광역문화재단

○ 사업 수행 체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로 사업(협업/기획/지역) 공모 및 운영 총괄, 성과관리 -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운영 관리		
		운영기관(광역문화재단) 지역사업 운영 (지역별 계획수립 및 시행)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 팀 프로젝트 기획 - 예술인-기업·기관 매개	팀 프로젝트 실행·협력	팀 프로젝트 운영·협력

○ 사업별 추진일정(변경)

구분	1월	2월	3월	4월	5~10월	11~12월
기획사업 (단년)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공고	⇒ 참여팀 모집	⇒ 참여팀 선정발표	⇒ 리더/참여예술인 5~10월 (총 6개월) [예북] 활동관리 및 컨설팅·모니터링 운영	⇒ (2기) 결과보고 및 사업종료 (3기) 활동평가
구분	1월	2월	3월	4~5월	6~11월	12~27.1월
협업사업 (단년)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공고 / 기업· 기관 신청 접수	⇒ 기업기관 선정 발표	⇒ 리더/참여 예술인 신청·접수	⇒ 리더 예술인 선정발표 ⇒ 기업기관 리더 예술인 매칭 ⇒ 참여 예술인 선정발표 기업기관 참여 예술인 매칭	⇒ (리더예술인) 6~11월 (총 6개월) (참여예술인) 7~11월 (총 5개월) 결과보고 / 사업종료
지역사업 (단년)	기관 선정	⇒ 지역 운영기관별 예술로 사업 추진 (2~27.1월) [예북] 성과관리(컨설팅·모니터링) 운영				⇒

○ 추진주체별 주요 역할

구분	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운영기관(광역문화재단) 선정 및 교부 -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광역문화재단)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운영 -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광역문화재단) 사업운영 지원 - 저작권 교육, 약정체결 및 보고서 작성 시스템 지원 등 - 통합 성과관리(컨설팅·모니터링) 지원 및 만족도 조사 운영 - 예술협업활동 성과사례 발굴 및 공유 지원

구분		내용
		• 예술 일자리 박람회 및 예술로 사업 통합 성과공유회 운영 • 참여 예술인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및 산재보험료 지원^{*신규}
지역 운영기관 (광역문화재단)		• 운영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예산 변경 필요시 복지재단 사전 승인 필수 • 예술인 관리(활동비 지원) 및 협업활동 지원 • 간담회 운영, 팀 프로젝트 모니터링, 언론홍보 등 성과관리 추진 • 이슈 발생시 복지재단에 상황 적극 공유 및 리스크 관리 대응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 현황 공유
참여자	리더예술인	• 기업·기관의 이슈 진단 및 협업활동 방향 설계(기획) • 기업·기관, 참여예술인과 협업활동 진행 및 공유 •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예술인 활동보고서 검토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만족도 조사 참여
	참여예술인	• 기업·기관, 리더예술인과 협업활동 진행 및 공유 •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만족도 조사 참여
	기업·기관	• 협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환경(공간, 재료비 등) 및 OJT 제공 •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활동 협력 • 예술인 활동보고서 검토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적용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26년도에 시행되는 <예술로 기획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 지원기간 및 일정

○ 지원기간: 총 12개월

- 2026년 5월~10월(6개월), 2027년 3월~10월 중 6개월 지원

※ 단, 1차년도('26년) 평가결과에 따라 2차년도('27년) 연속지원 결정

○ 추진일정

추진일정 (2026~2027년)				
구분	'26년 2~3월	'26년 4월	'26년 5~10월	'26년 11~12월
예술로 기획사업	⇒ 참여 팀 공고 및 모집	⇒ 참여 팀 선정 및 발표	⇒ 협업활동 진행 리더/참여예술인 5~10월 (총 6개월)	⇒ 워크숍 및 1차년도 활동평가*
	'27년 3~10월 중 6개월			'27년 11~12월
	3월 또는 5월 중 활동 시작 월 선택하여 협업활동 진행 리더/참여예술인 (총 6개월)			⇒ 결과보고 / 사업종료

* 1차년도 평가결과 및 차년도(2027년) 예산 고려하여 연속지원 결정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주제의 적절성·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프로젝트 지속·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전 기획을 통해 기업·기관의 이슈를 해결, 혁신하고자 하는 참여 팀(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및 기업·기관) 다년(2026~2027년) 지원

구분	내용
신청자격	1.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경우 만 신청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제외
	2. 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기관 (휴/폐업 제외)
	<팀 구성요건>
	• 팀별 기업·기관 1곳, 리더예술인 1인, 참여예술인 2인 이상~6인 이하 구성
	• 팀별 2가지 이상 예술분야 혼합 구성 필수(단, 예술분야는 예술활동증명 분야 구분에 따름)
	※ 지원신청 이후, 구성원은 변경(충원)할 수 없음.

구분	내용																																
참여제한	1.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제한 통보를 받은 자는 예술로 사업 및 아래 표에 명시된 사업에서 참여제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2. 기업·기관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89 코드 ex. 000-89-00000 - 단,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허용 • 단순교육 형태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 • 타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 • 기업·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위탁(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요구하는 기업·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기업·기관																																
지원내용 및 규모	• (전체 규모) 약 18팀 (예술인 약 90명, 기업·기관 약 18곳) <table><tr><th>구분</th><th>리더예술인</th><th>참여예술인</th><th>기업·기관</th></tr><tr><td>선정규모*</td><td>약 18명</td><td>약 72명</td><td>약 18곳</td></tr><tr><td>활동기간</td><td colspan="3">2026년 5월~10월 (6개월) / 2027년 3월 또는 5월 중 시작월 선택 (6개월) (총 12개월)</td></tr><tr><td>활동지역</td><td colspan="3">전 지역</td></tr><tr><td>지원내용</td><td colspan="2">협업활동 기회 및 진행 직업역량강화(교육·컨설팅 등),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지원</td><td>예술적 개입을 통한 이슈 해결 기회 제공</td></tr><tr><td rowspan="3">지원규모</td><td>총 960만원(1인당)</td><td>총 840만원(1인당)</td><td rowspan="3">리더예술인 1명 참여예술인 2~6명</td></tr><tr><td>- 격월 320만원</td><td>- 격월 280만원</td></tr><tr><td>- 세액/보험료*** 공제 후 지급</td><td>- 세액/보험료*** 공제 후 지급</td></tr><tr><td colspan="4">※ 지원규모(활동비)는 2026년 기준</td></tr></table>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확정 **예술인 산재보험 본인 가입 신청 및 월별 보험료 납부 → 납부 확인 후 환급(1등급 기준) ***사업소득세(3.3%)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금(0.8%)(예술인 고용보험 요율: 1.6%)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선정규모*	약 18명	약 72명	약 18곳	활동기간	2026년 5월~10월 (6개월) / 2027년 3월 또는 5월 중 시작월 선택 (6개월) (총 12개월)			활동지역	전 지역			지원내용	협업활동 기회 및 진행 직업역량강화(교육·컨설팅 등),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예술적 개입을 통한 이슈 해결 기회 제공	지원규모	총 960만원(1인당)	총 840만원(1인당)	리더예술인 1명 참여예술인 2~6명	- 격월 320만원	- 격월 280만원	- 세액/보험료*** 공제 후 지급	- 세액/보험료*** 공제 후 지급	※ 지원규모(활동비)는 2026년 기준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선정규모*	약 18명	약 72명	약 18곳																														
활동기간	2026년 5월~10월 (6개월) / 2027년 3월 또는 5월 중 시작월 선택 (6개월) (총 12개월)																																
활동지역	전 지역																																
지원내용	협업활동 기회 및 진행 직업역량강화(교육·컨설팅 등),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예술적 개입을 통한 이슈 해결 기회 제공																														
지원규모	총 960만원(1인당)	총 840만원(1인당)	리더예술인 1명 참여예술인 2~6명																														
	- 격월 320만원	- 격월 280만원																															
	- 세액/보험료*** 공제 후 지급	- 세액/보험료*** 공제 후 지급																															
※ 지원규모(활동비)는 2026년 기준																																	
유의사항	• 세부 사업별(협업/기획/지역), 역할별(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기업·기관)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는 불가 ※ 기획사업은 역할별 중복 신청 불가(확인 시 심의 제외) • 기획사업 최종 선정 시, 예술인 및 기업·기관 모두 기획사업 우선 적용 (선택 불가) • 사업 선정 이후 산재보험 미가입시 활동비 지급 불가 • 「예술로」 사업과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예술로」 기획사업 선정 시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은 자동 제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ART청년창작자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주체별 역할 및 활동내용

1. 리더예술인

○ (활동일수/시간) 회차별* 총 20일, 60시간 이상 활동

* 1회차는 2개월 단위로 구분(ex. 2026년 1회차 활동: 5~6월)

- 협업활동과 개별활동으로 구분하며, 활동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예시
협업활동	팀 내 기업·기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간의 활동만 인정	팀 회의, 프로젝트 발표 등
개별활동	팀 내 협업활동을 위한 개별적인 활동만 인정	리서치, 성과 취합 등

○ (활동내용)

- 참여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기업·기관을 매개하여 협업주제 방향 설계, 프로젝트 총괄 운영 및 성과관리
 - 팀 내 예술인들이 수행하는 예술활동 조력
 - 격월 팀 활동보고서 및 1차년도 중간점검 보고서, 최종 (개별)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참여예술인 활동내용 및 성과관리 취합(도큐멘테이션, 아카이빙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오리엔테이션, 컨설팅, 워크숍 등) 참여
- ※ 재단 주최행사 참석 시, 활동일수 인정(단,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참석)

2. 참여예술인

○ (활동일수/시간) 회차별 총 20일, 60시간 이상 활동

- 협업활동과 개별활동으로 구분하며, 활동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예시
협업활동	팀 내 기업·기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간의 활동만 인정	팀 회의, 프로젝트 발표 등
개별활동	팀 내 협업활동을 위한 개별적인 활동만 인정	리서치, 영상편집, 드로잉 작업 등

○ (활동내용)

- 리더예술인 및 기업·기관과 협업활동 실행
- 격월 팀 활동보고서 및 1차년도 중간점검 보고서, 최종 (개별)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활동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빙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오리엔테이션, 컨설팅, 워크숍 등) 참여
 - ※ 재단 주최행사 참석 시, 활동일수 인정(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 예술인 의무활동 일수(시간) 세부 내용

- (회차별) 총 20일, 60시간 이상, 협업활동 10일, 30시간 이상 수행(필수)
 - ※ 의무활동일수(시간) 미충족 시, 해당 월 활동비 지급 불가
- 필수협업활동(회차별 총 4회 이상)
 - (2회 이상) 팀(기업·기관 담당자, 예술인) 전체 참석 회의·활동
 - (2회 이상) 예술인 전체 참석 회의·활동
 - ※ 단, 필수협업활동은 동일 날짜에 활동 불가

3. 기업·기관

-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과 협업활동 운영 및 실행
- 격월 팀 활동보고서 검토·확인 및 1차년도 중간점검 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협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활동 공간, 운영비, 재료비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행사(오리엔테이션, 컨설팅, 워크숍 등) 참여

□ 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사업참여신청서 및 협업활동계획서 종합검토를 통해 2차 심의 대상 팀 선정
 - 2차 PT·인터뷰 심의: 1차 심의 선정 팀 PT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최종 지원 팀 선정
 - ※ 2차 심의는 리더예술인 및 기업·기관 예술로 사업 담당자(1인) 참석 필수

○ 심의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서류 / PT·인터뷰 심의	협업주제 적절성	30점	▶ 예술로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 예술로 사업이 의도하는 예술(인)을 통한 예술적(활동영역 확장 및 성취), 사회적(지속가능성 기여) 가치 확산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 협업주제 도출 과정과 팀 구성 사유는 설득력 있는가? ▶ 기업기관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선명하게 정의하였는가? ▶ 협업주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상을 하였는가? ▶ 협업주제에 따른 팀개인 목표는 적절한 도전성과 실험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는가?
	협업주제 실행방안	30점	▶ 문제의식을 해결해가는 적절한 방법론을 수립하였는가? ▶ 협업주제 실행방안은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게 계획되었는가? ▶ 협업주제 실행방안이 관성적이거나 정형화된 방법론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 예술적 방식으로 재해석·접근하고 있는가? ▶ 실제 실행을 위한 자원(재료, 공간, 비용 등)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협업주제 실행역량	20점	▶ 협업주제 실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참여자 구성과 역할 배분이 이루어졌는가? ▶ 팀 구성원의 특징과 관심사가 반영된 적극적 결합인가? ▶ 팀 구성원은 협업주제에 공감하며 실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기대효과	20점	▶ 사업 종료 이후 기업·기관 및 예술인의 상호 성장·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유·무형의 결과물이 사회에 어떻게 위치하고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였는가? ▶ 본 예술협업활동이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합계		100점	

※ 가산점 적용: 서류심의 시, 예술활동증명 경력단절 유효자는 가산점(5점) 부여(최대 5점)

※ 인센티브 적용: 전년도 우수사례 수상팀 내 3명 이상 예술인이 팀으로 지원 시, 서류심의 선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http://goartist.kawfartist.kr>)에서 팀 리더예술인이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전, 기업·기관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필수

※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반드시 첨부

※ 기참여한 경우, 기존 ID/PW 사용 가능.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 회원가입 필요

○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① 사업참여신청서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구분	세부내용	비고
	② 협업활동계획서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리더예술인) 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참여예술인) 지정서식 사용 및 작성 후, 시스템 상 파일 첨부
기타	① PT 자료	1차 심의 선정 팀에 한하여 추가 제출
	② 근로/용역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및 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용역계약서' 제출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파일 첨부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접수기간 내 제출된 신청서만 유효

□ 약정체결

○ 약정체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예술로 기획사업> 참여 팀 선정 후, 참여주체별(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로 약정을 체결한다.
- 재단에서 제시한 기한 내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 선정은 자동 취소된다.
- 리더/참여예술인은 약정체결과 함께 <본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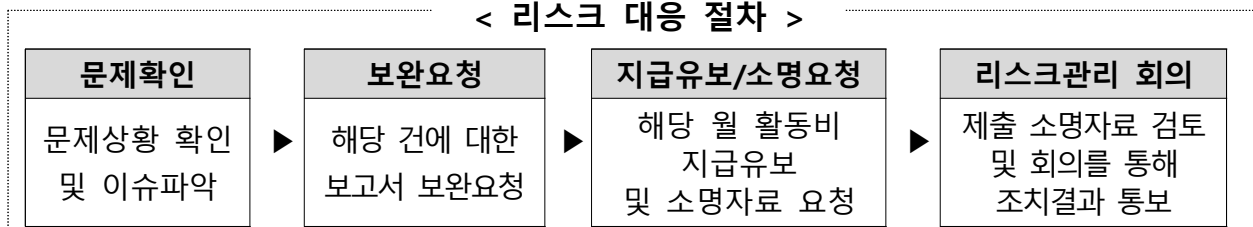
○ 약정변경

- 참여주체 역할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약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약정해지 및 사업 참여제한·제재

- 예술로 사업과 무관한 활동(결혼식·집회 참석, 음주 등)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사회적·도덕적 부적절한 문제 등)가 확인될 경우, 재단은 해당 팀(예술인 및 기업·기관)과의 약정해지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약정해지 및 참여제한에 대한 상황별 적용기준 및 조치내용은 아래 표 지침에 근거하여 조치하되, 리스크 대응 절차를 통해 논의 후 조치할 수 있다.

< 리스크 대응 절차 >



○ 약정해지(참여제한) 참여주체별 세부기준

구분	상세내용	조치내용																		
예술인	-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부정한 방법) 실제로 활동한 것과 다른 내역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예술인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리스크관리 회의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경우	당해 연도 약정해지 및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사안에 따라 리스크 대응 절차를 통해 조치할 수 있음)																		
	- 기업·기관에 해당 팀 예술인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재단 리스크관리 회의를 통해 지속적 협업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 예시 -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하는 등 협업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 특정인의 언어적·물리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협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의 일정을 타 참여자들에게 강요하는 경우 - 약정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타 참여자에게 제안 또는 강요한 경우	당해 연도 약정해지 및 다음 연도부터 1년간 재단사업 참여 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주의점수 부여] <table><tr><th>대상</th><th>내용</th><th>주의점수</th><th>비고</th></tr><tr><td rowspan="4">예술인 공통</td><td>필수행사(OT) 불참</td><td>1점</td><td></td></tr><tr><td>활동보고서 증빙자료 미흡</td><td>1점</td><td>지정앱 사진, 첨부파일 등</td></tr><tr><td>필수협업활동 미충족</td><td>1점</td><td>팀 구성원(기업·기관 담당자 및 예술인) 전원 참석</td></tr><tr><td>활동보고서 제출 지연</td><td>0.5점</td><td></td></tr></table> *사유서 및 증빙자료가 재단 승인을 받은 경우 주의점수 미부여		대상	내용	주의점수	비고	예술인 공통	필수행사(OT) 불참	1점		활동보고서 증빙자료 미흡	1점	지정앱 사진, 첨부파일 등	필수협업활동 미충족	1점	팀 구성원(기업·기관 담당자 및 예술인) 전원 참석	활동보고서 제출 지연	0.5점		- 해당 건별 주의점수 부여 - 누적 5점시 당해 연도 약정해지 및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내용	주의점수	비고																
예술인 공통	필수행사(OT) 불참	1점																		
	활동보고서 증빙자료 미흡	1점	지정앱 사진, 첨부파일 등																	
	필수협업활동 미충족	1점	팀 구성원(기업·기관 담당자 및 예술인) 전원 참석																	
	활동보고서 제출 지연	0.5점																		
팀 선정 이후, 약정체결을 포기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1년간 예술로 사업 참여 제한																		
기업·기관	[사회통념상 윤리] - 팀 활동보고서 상 예술인의 사실과 다른 활동시간 및 활동 내용 기재를 묵인한 경우 -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하는 경우 - 고의로 재단, 예술인을 비방하여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리스크관리 회의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경우	당해 연도 약정해지* (*사안에 따라 리스크 대응 절차를 통해 조치할 수 있음)																		
	[사업 참여 지속가능성] - 기업·기관의 휴·폐업 또는 도산, 합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 사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 예술인의 의무활동일수(시간)의 활동 보장이 불가한 경우 - 예술인과의 소통의 문제 또는 갈등으로 정상적인 협업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 사업 담당자의 변경 또는 부재로 사업의 지속적 관리 및 참여가 불가한 경우	당해 연도 약정해지																		

구분	상세내용	조치내용
	[예술인과의 협업관계] • 재단의 동의 없이 예술인의 활동을 제3자에게 하도급 준 경우 • 재단 및 예술인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활동을 강요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활동(노동)을 요구한 경우 • 모니터링, 자료 제출 등 재단의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를 합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활동을 통해 취득된 성과물을 재단 또는 예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시정 요구 및 경고* (*경고 후 10일 이내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활동비 지급(예술인)

○ 활동비 지급 및 관련 서류

- 재단은 <예술로 기획사업>에 선정된 각 팀의 예술인과의 개별 약정체결 후 해당 예술인에게 활동기간 동안 지정일자에 지정된 활동비를 지급한다.
- 활동비는 재단이 정한 기한 내에 격월 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예술인에 한해 지급한다.

활동비 지급 기준	비고
• 회차별(2개월 단위) 20일, 60시간 이상 - 협업활동 10일, 30시간 이상 수행	※ 협업활동 기준 - 팀 내 기업·기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간의 활동만 인정

- 경조사(본인 결혼·입원, 직계가족 사망 등), 질병 및 상해 등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의무활동일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이로 인해 미충족된 의무활동일수(시간)에 대한 활동비 지급은 다음 회차로 이월 가능하다. 단, 회차별 의무활동일수(시간)의 1/2(총 10일, 30시간) 충족 시, 1개월 활동비 지급.

※ 경조사, 질병 및 상해 외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리스크 대응 절차를 통해 승인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음

※ 단, 활동 마지막 회차는 해당되지 않음

○ 산재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 <예술로 기획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하여야 하며, 월별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다.

- 사업 선정 이후 산재보험 미가입시 활동비 지급에서 제외된다.
- 보험료 지원 기간은 본 사업 참여 기간으로 한다.
- 재단은 활동 종료 후 개별 예술인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관련 기준(1등급 예술인 업무내용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2026 예술인 산재보험 등급별 보험료> (중소기업 사업주 기준)					
구분	월 보험료		구분	월 보험료	
	창작/실연/기술지원	일부 기획직군		창작/실연/기술지원	일부 기획직군
1등급	16,570원	21,590원	7등급	36,910원	48,090원
2등급	19,960원	26,010원	8등급	40,300원	52,510원
3등급	23,350원	30,430원	9등급	43,690원	56,930원
4등급	26,740원	34,840원	10등급	47,080원	61,340원
5등급	30,130원	39,260원	11등급	50,470원	65,760원
6등급	33,520원	43,680원	12등급	53,860원	70,180원

□ 사업참여중단

- 예술인 및 기업·기관이 사업 진행 중 본인 의사로 참여를 중단할 경우, 중단 사유를 명시하여 5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재단에 알려야 한다.
 - ※ 리더예술인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팀 내 참여예술인 중 리더예술인을 지정하여 사업진행. 새로 지정된 리더예술인은 약정 변경(역할 변경) 후 리더예술인 활동비 지급
- 팀 내 예술인 전원 약정해지 시, 기업·기관은 자동으로 약정해지
- 활동기간 중 신청 당시 구성인원의 과반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팀 사업참여중단(약정해지)
- 기업·기관 사업참여중단 시, 예술인은 기업·기관을 변경하여 활동할 수 없으며 해당 팀 활동은 즉시 중단된다.

□ 선정 후 협업활동 계획 변경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 시 제출한 협업활동계획서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 및 내용을 포함한 협업활동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변경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재단에 알려야 한다.
 - ※ 협업활동 변경계획서 제출 필수 사유: 1)협업활동 주제 변경, 2)지원신청 시 제출한 협업활동 계획 달성률 50% 미만의 경우

- 협업활동 변경계획서 제출 후 재단의 행정심의 및 승인을 통해 변경사항 적용 및 협업활동 진행이 가능하다.

□ 성과관리 및 환류

- 사업 컨설팅·모니터링
 - 재단은 <예술로 기획사업> 성과 발굴·촉진을 위해 책임 멘토링제 컨설팅·모니터링 등의 단계별 성과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술인 및 기업·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활동관리
 - 재단은 <예술로 기획사업> 활동과정 및 결과를 통해 참여주체별 만족도 및 성과(성취)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종료 이후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 재단은 <예술로 기획사업> 예술인, 기업·기관 참여에 따른 우수성과를 선정하여 시상(홍보)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 연도 예술로 사업 심의에 적용할 수 있다.
 - 재단은 <예술로 기획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및 기업·기관이 협업활동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받은 주의 등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 연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 연속지원 평가

- 예술로 기획사업 1차년도('26년) 활동 중간평가를 통해 2차년도('27년) 연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책임멘토 제외) 심의로, 승인/미승인 형식으로 연속 지원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다.
- 2차년도 연속지원 여부는 1차년도 평가결과 및 차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재단'이 결정하며, 2차년도 미승인된 경우 1차년도 활동 종료일에 자동으로 종료한다.

붙임 2

[서식] 참여신청서 및 협업활동계획서

- *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신청서 작성은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 시스템 접수양식과 아래 서식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로[路] 기획사업』 참여신청서

1. 일반사항

☞ 예술인 작성

리더 예술인	한글(본명)		생년월일	
	필명/예명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이메일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휴대전화		일반전화	
	현주소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예술분야 (예술활동증명)	☐ 문학 ☐ 미술 ☐ 음악 ☐ 무용 ☐ 연극 ☐ 만화 ☐ 영화 ☐ 연예 ☐ 국악 ☐ 사진 ☐ 건축		
	세부장르	* 예) 문학-소설, 시, 희곡, 수필, 평론 / 음악-국악, 대중음악 / 미술-설치, 영상, 미디어아트 등		
	고용보험 가입여부	☐ 네 ☐ 아니요 * '네'에 체크 시, 고용가입 확인서류(고용처, 근로기간, 근로시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 첨부		
	현직 및 소속단체			
	예술활동증명 만료일	(년 월 일)까지 유효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참여 예술인 ①	한글(본명)		생년월일	
	필명/예명		이메일	
	휴대전화		일반전화	
	현주소			
	예술분야 (예술활동증명)	☐ 문학 ☐ 미술 ☐ 음악 ☐ 무용 ☐ 연극 ☐ 만화 ☐ 영화 ☐ 연예 ☐ 국악 ☐ 사진 ☐ 건축		
	세부장르	* 예) 문학-소설, 시, 희곡, 수필, 평론 / 음악-국악, 대중음악 / 미술-설치, 영상, 미디어아트 등		
	고용보험 가입여부	☐ 네 ☐ 아니요 * '네'에 체크 시, 고용가입 확인서류(고용처, 근로기간, 근로시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 첨부		
	현직 및 소속단체			
	예술활동증명 만료일	(년 월 일)까지 유효		

* 참여예술인 인원수에 맞춰 입력 가능

☞ 기업·기관 담당자 작성

기업·기관 정보	기업·기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설립년도		대표전화	
	홈페이지/블로그/SNS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상세주소)		
	예술인 활동지 □ 상동	(우편번호)		
		(상세주소)		
	업종/업태 * 사업자등록증 기준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기타		
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직책	
	부서		담당업무	
	직통전화		휴대폰	
	담당자 이메일			
장애인 편의시설 (복수 선택가능)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및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혹은 장애인이 주차 가능한 구역 ☐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또는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 점자블록 ☐ 없음		
지원 관련 사항	지원 형태	회의/활동 공간지원	☐ 없음 ☐ 있음 ☐ 수용인원(명) ☐ 부속시설(빔 프로젝터, 노트북 등) ☐ 기타() ※ 회의/활동 공간 등 이미지 삽입	
		회의/활동 가능일자 (복수선택가능)	☐ 월(오전/오후) ☐ 화(오전/오후) ☐ 수(오전/오후) ☐ 목(오전/오후) ☐ 금(오전/오후) ☐ 토 ☐ 일 ☐ 상관없음 ☐ 기타() * 월 1회 이상 기업·기관 담당자 및 예술인 전체 회의 참석 필수	

	추가 활동비/예산 지원 (복수선택가능)	☐ 없음 ☐ 있음(_____원)
	기타지원	☐ 교통(비)지원 ☐ 숙박(비)지원 ☐ 운영비 지원 ☐ 추가 활동비 지원 ☐ 기타()
	예술로 사업 참여 이력 (복수선택가능)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처음참여 * 사업에 우선 선정되었지만, 예술인과 미매칭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참여연도 체크 시, 참여한 연도별로 각각의 사업내용을 기술 * 예) 2025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워크숍
	최근 3년간(23~25년) 문화예술관련 지원금 수혜 유무	☐ 유 ☐ 무 *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출처 입력하세요. * 예) 2024년 OO문화재단 공간지원사업 선정 2025년 OO진흥원 플랫폼 지원사업 선정
사업을 알게 된 경로	☐ 재단 홈페이지 ☐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 ☐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 기타(기타 알게된 경로를 입력해주세요.)	

1. 기업·기관 소개 (1,000자 이내)

2. 협업활동유형 (복수선택가능)

☐ ESG경영·사회공헌활동 (메세나, 환경, 사회적 책임 등)

☐ 사회문제해결·사회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등)

☐ 환경·생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종식, 질병, 성평등, 난민, 분쟁 등)

☐ 홍보·마케팅 (기업·기관 이미지 제고, 브랜딩 등)

☐ 사내 직원 복지 (조직문화 개선, 직원 복리후생 향상 등)

☐ 공간 개선·활성화 (유희공간 개선, 공간 거점 활성화 등)

☐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 고유자원 예술적 재해석,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 제품·서비스 신규 기획·개발 또는 개선

3. 사업참여동기 및 협업 주제 (2,000자 이내 요약)	
*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예술인과 협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이슈/고민 등 기재	
4. 기대효과 (2,000자 이내 요약)	
*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대·내외적) 및 결과물 활용계획 기재	
관련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파일명은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단체명)으로 해주세요.) ☐ 기업소개문서 (※ 첨부파일 용량제한 : 50mb)

2. 예술활동 실적 (예술인)

- * 최근 3년간(2023-2025년)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데뷔 이후 주요 활동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매칭기업·기관과 본인의 역할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리더예술인 김복지			
기간	내용	주관·주최	역할
2023. 1. 5.~2023. 5.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	기획자
■ 참여예술인① 김예슬			
기간	내용	주관·주최	역할
2023. 1. 5.~2023. 5.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	참여작가

3. 예술협업활동 계획

1. 협업활동 기간
2026년 5월 ~ 2026년 10월 (총 6개월) 2027년 0월 ~ 2027년 0월 (총 6개월) : 시작/종료월 직접 선택 (시작월은 3월 또는 5월 / 종료월은 8월 또는 10월 중)
2. 협업주제 요약 * 500자 이내, 구체적인 내용은 <협업활동계획서>에 기재

2026년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로[路] 기획사업』 협업활동계획서

구성원	리더예술인	ex. 김복지(미술)
(이름/장르)	참여예술인	ex. 김예술(문학), 이문화(미술)

1. 2026~2027년 협업활동

○ **상황 분석 및 문제 인식**

- 본 기획을 위해 기업·기관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정리

○ **협업주제 도출 과정 및 팀 구성 과정**

-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결정하였다면, 그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협업주제를 도출하고, 어떤 인력들로 팀이 구성되어, 각 팀원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고, 함께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가를 정리

○ **협업 주제**

- 프로그램의 목적, 대상,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예상 진행 내용**

- 이상의 과정으로 도출된 예상 사업 진행 내용을 정리

○ **2026년 협업 목표**

- 2026년의 목표가 전체 협업 주제와 예상 진행 내용에서 어디까지의 목표를 설정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작성

○ **2027년 협업 목표**

- 2027년의 목표가 2026년의 어떤 부분에 기반하여, 협업 주제와 예상 진행 목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달성하게 되는지 작성

○ **2026년~2027년 개인별 목표 (*개별 작성한 내용을 리더예술인이 업로드)**

- 팀으로서가 아니라, 참여하는 개별 예술인 자신이 협업 과정을 통해 달성해보고자, 또는 경험해보고자 하는 개인 단위의 목표를 정리

○ **협업 주제 실행 방안**

- 실제 협업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리소스 및 역량, 시스템과 지원 내용을 정리
- 해당 요소의 구현 및 획득 방안을 함께 정리

○ **협업주제의 확산**

- 2026-2027년 활동 이후에도 해당 협업주제가 기업·기관, 팀으로서의 예술인, 개인으로서의 예술인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가에 대한 기대 지점을 작성

○ 추진일정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용	비고
2026년	5~6월		
	7~8월		
	9~10월		

활동기간 * 활동시작 월 (3월 또는 5월 중 선택하여 2개월씩 작성)		주요 활동내용	비고
2027년	0~0월		
	0~0월		
	0~0월		

○ 팀 구성원별 관심사 및 팀 내 역할 (* 개별 작성한 내용을 리더예술인이 업로드)

기업·기관 (기업·기관명/담당자성함)	
리더예술인 (본명)	
참여예술인 (본명)	
참여예술인 (본명)	
참여예술인 (본명)	
참여예술인 (본명)	

2. 참고자료

1) 예술작업

- *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예술로 사업 통합 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신의 대표적인 예술작품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이미지(또는 URL)를 첨부해주시시오.
 - URL을 첨부할 경우, 링크가 작동하는 지 필히 확인해 주십시오.

리더예술인 (성명)김복지	
이미지-①	설명-①
	예) <문학> 1. 작품명: ○○○ 2. 세부장르: 소설 3. 발표년도: 2017년 4. 출판사명(발표지명): 민음사 5. 세부내용:
이미지-②	설명-②
	예) <문학> 1. 작품명: ○○○ 2. 세부장르: 소설 3. 발표년도: 2017년 4. 출판사명(발표지명): 민음사 5. 세부내용:
이미지-③	설명-③
	예) <문학> 1. 작품명: ○○○ 2. 세부장르: 소설 3. 발표년도: 2017년 4. 출판사명(발표지명): 민음사 5. 세부내용:

참여예술인① (성명)김예슬	
이미지-①	설명-①
	예) <문학> 1. 작품명: ○○○ 2. 세부장르: 소설 3. 발표년도: 2017년 4. 출판사명(발표지명): 믿음사 5. 세부내용:
이미지-②	설명-②
	예) <문학> 1. 작품명: ○○○ 2. 세부장르: 소설 3. 발표년도: 2017년 4. 출판사명(발표지명): 믿음사 5. 세부내용:
이미지-③	설명-③
	예) <문학> 1. 작품명: ○○○ 2. 세부장르: 소설 3. 발표년도: 2017년 4. 출판사명(발표지명): 믿음사 5. 세부내용:

2. 참고자료

2) 예술협업 및 기타 사회적 활동

*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예술로 사업 통합 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바탕으로 실행한 다양한 활동(지역 및 기업·기관 연계 활동, 워크숍·강의, 학문적 연구 등)을 기술하고 관련 이미지(또는 URL)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URL을 첨부할 경우, 링크가 작동하는 지 필히 확인해 주십시오.

리더예술인	(성명)김복지
이미지-①	설명-①
	예)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프로젝트명 : 2. 참여자 역할 : 3. 프로젝트년도 : 4. 주최·주관 및 장소 : 5. 세부내용 :
이미지-②	설명-②
	예)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프로젝트명 : 2. 참여자 역할 : 3. 프로젝트년도 : 4. 주최·주관 및 장소 : 5. 세부내용 :
이미지-③	설명-③
	예)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프로젝트명 : 2. 참여자 역할 : 3. 프로젝트년도 : 4. 주최·주관 및 장소 : 5. 세부내용 :

참여예술인①	(성명)김예슬
이미지-①	설명-①
	예)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프로젝트명 : 2. 참여자 역할 : 3. 프로젝트년도 : 4. 주최·주관 및 장소 : 5. 세부내용 :
이미지-②	설명-②
	예)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프로젝트명 : 2. 참여자 역할 : 3. 프로젝트년도 : 4. 주최·주관 및 장소 : 5. 세부내용 :
이미지-③	설명-③
	예)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프로젝트명 : 2. 참여자 역할 : 3. 프로젝트년도 : 4. 주최·주관 및 장소 : 5. 세부내용 :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첨부

- * 협업활동 변경계획서 제출 필수 사유: 1)협업활동 주제 변경, 2)지원신청 시 제출한 협업활동 계획 달성률 50%미만의 경우
- * 협업활동 변경계획서 제출 후 재단의 행정심의 및 승인을 통해 변경사항 적용 및 협업활동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술로[路] 기획사업 협업활동 변경계획서

신청사업명	예술로[路] 기획사업
리더예술인	* 본명(활동명) 한글로 기입 ex.김복지(바람)
참여예술인	* 본명(활동명) 한글로 기입 ex.김예술(구름)
기업·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1. 협업활동계획서는 한글(HWP) 형식을 사용하여 표지 포함 **최대 총 5매 이내로 작성**
2. 제목을 제외한 본문은 **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검정색**으로 작성
3. 협업활동 변경계획서 내 **파란 글씨(작성안내**를 위한 안내 또는 예시문구)는 제출 시 반드시 삭제
4. 파일명은 **“예술로 기획사업 협업활동 변경계획서_리더예술인(본명)_기업·기관명”**으로 제출

구성원 (이름/장르)	리더예술인	ex.김복지(미술)
	참여예술인	ex.김예술(문학), 이문화(미술)

1. 협업활동 변경사항

○ 협업활동 변경 사유 및 필요성(*자세히 작성)

○ 협업활동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협업 주제 실행 방안(*변경 후)

○ 추진일정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용	비고
5~6월		
7~8월		
9~10월		

2. 회의록

* 기업·기관·예술인 간 협업활동 변경사항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 회의내용 등

붙임 4

[서식] 1차년도 중간점검 보고서

- ◎ 사업명: 예술로(路) 기획사업
- ◎ 기업·기관:
- ◎ 리더예술인:
- ◎ 참여예술인:

협업활동계획서 (사업 신청서)		변경사항
2026년 협업활동 기간		
2027년 협업활동 기간		
협업주제 (요약)		
협업활동계획서 (사업 신청서)		1차년도 추진내용
2026년 협업 목표		1차년도 성과 내용 요약 정리 (이미지 / 영상 등 별첨 제출)
2027년 협업 목표		구체화된 내용 작성
협업 주제 실행 방안		구체화된 내용 작성 (월별 활동내용 포함)

협업 주제의 확산		구체화된 내용 작성
활동 점검사항		
1차년도 우수한 점		
1차년도 아쉬운 점		
기업·기관 의견	기업/기관 담당자 작성란	
기업·기관 지원	기업/기관 담당자 작성란 (예산지원 여부 등)	
1차년도~2차년도 공백기간 내 계획		
책임멘토 피드백	담당 책임멘토 작성란	